

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Q&A

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
A

-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하시면 당일 오후부터 지급됩니다.
- 지급 안내 문자를 받고 「버팀목자금.kr」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?

A

-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,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.

구분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집합금지업종	○	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	무관	300만원
영업제한업종	○	예) 유흥주점 10억원 이하	무관	200만원
일반업종 (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)	○	연4억원 이하	○	100만원

•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연말연시 특별방역
집합금지	유흥업소 5종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펍	실외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·빙상장·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·교습소, 직업훈련기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	숙박시설

Q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가요?

A

- 1월 중에 현장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(☎1522-35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체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

-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·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
- 세금체납자(국세, 지방세)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
Q 한 사람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

- 사업체당 1회,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합금지(영업제한)업종과 일반업종을 운영하실 경우, 지원금액이 더 많은 집합금지(영업제한)업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.
- 개인 명의로와 법인 명의로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실 경우,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,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지급됩니다.
-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대표자 중 1인에게만(나머지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) 지급됩니다.

Q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?

A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(사행성 업종, 변호사 등 전문직종 등)
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- 무등록 사업자,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·폐업 소상공인

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나요?

A

- 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(☎1522-3500 (평일 09~18시 운영))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.kr)
- 온라인 채팅상담 (평일 09~20시 운영)

